

제안설명서

- 일 시 : 2019. 11. 29(금)
- 장 소 :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(1134)

평생교육국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1134호)

- 의안번호 제1134호,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 - 현행 감면 적용 기한 : 2019.12.31.

- 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적용한 2019년 5월 이후 청소년시설 이용자의 제로페이 결제가 증가하고 있으며, '19년 10월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과 제로페이 연동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제로페이 결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, 사용료 감면기한 연장시 제로페이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제로페이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「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19. 11. 29.

평생교육국장 엄연숙